

■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2. 12. 12.>

고유목적사업회계 수입예산과목(제11조제3항 관련)

관	항	목	세부 명세
1. 재산수입	1. 기본재산수입	1. 토지 임대수입 2. 건물 임대수입 3. 임야 수입 4. 그 밖의 수입	대지, 전(田), 답(畓) 등의 임대 수입 건물의 임대 수입 임야에서 발생하는 수입
	2. 재산매각수입	1. 토지 매각수입 2. 건물 매각수입 3. 임야 매각수입 4.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2. 보조금수입	1. 보조금수입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전입금	1. 수익사업전입금	1. ○○사업수입 2. ○○사업수입	수익사업으로부터의 전입금
4. 투자수입	1. 투자수입	1. 배당금 2. 국채상환금 3. 국채 이자수입 4. 그 밖의 증권수입	주식 등에 대한 배당금 국채의 원금 수입 국채의 이자 수입 그 밖의 유가증권 수입
5. 전년도수입	1. 전년도수입	1. 기본재산수입 2. 재산매각수입 3. 투자수입 4. 사업수입	전년도 중에 수입으로 인식된 각 관의 수입으로서 해당 연 도 중 수입으로 확정된 것
6. 이월금	1. 전년도이월금	1. 전년도잉여금 2. 이월사업비	전년도 중 종료하지 못한 사업비
7. 기부금품	1. 기부금품	1. 기부금품	
8. 차입금	1. 차입금	1. 은행차입 2. 개인차입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인으로부터의 차입금
9. 잡수입	1. 물품매각수입		

	2. 예금이자	1. 불용물품매각수입	비품, 집기 등 불용품 매각 수입
		1. 정기예금이자	
		2. 신탁예금이자	
		3. 통지예금이자	
		4. 그 밖의 예금이자	
	3. 잡수입	1. 변상비	재산 분실 등에 따른 변상금
		2. 위약금	계약 위반에 따른 보증금 수입
		3. 잡수입	그 밖의 잡수입

※ 비고

1. 각 목은 보훈 관련 단체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관·항은 각 보훈 관련 단체에 해당하는 관·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3. 제18조에 따른 결산은 예산과목의 관·항·목에 따른다.